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5-2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2014 인천AG 신설경기장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 나.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그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미비한 조항에 대하여 규제 완화하는 등 관련근거에 따라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체육시설 참여의 폭과 질을 높이고, 기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미비한 조항에 대하여 규제 완화함.(안 제17조)

나. AG 신설경기장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함.(안 별표 1)

다. AG 신설경기장의 전용(이용)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별표1, 별표 2, 별표 3, 별표 6, 별표 8)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2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ysi33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금고에 예치하거나 그 이행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6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제1호 관련)

연번	명 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1	인천월드컵경기장 (문학경기장)	주경기장	육상·축구 각종행사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618
		보조경기장	육상·축구 각종행사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618
2	문학야구장		야 구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618
3	도원체육관		농구·배구·핸드볼 등 각종경기및 행사	인천광역시 중구 샛골로 41번길 10
	도원수영장		수 영	인천광역시 중구 샛골로 41번길 22
4	인천삼산월드 체육관(Incheon World Gymnasium)	주경기장	농구·배구 등 각종경기및 행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60
		보조경기장	농구·배구 등 각종경기및 행사	
		인조잔디 축 구 장	축 구	
5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롤러스케이트 인라인하키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히대로 499
6	가좌테니스장		테 니 스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 11번길 7
7	궁도장	계산궁도장	국 궁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97
		수봉궁도장	국 궁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로 95번길 32
8	수봉양궁장		양 궁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로 95번길 32
9	인천국제벨로드롬		싸이클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10	다목적운동장		하키, 정구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360
11	인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배드민턴 등 각종경기및 행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51
12	인천계산국민체육센터		수영·배드민턴 등 각종경기및 행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길 580
13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축구·풋살·야구 각종행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916
14	송도 LNG 야구장		야 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1190
15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축 구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246

연번	명 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16	송림체육관	체 육 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배구·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동구 염전로 30
			수영장	수 영	
17	문학박태환수영장			수 영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618
18	열우물테니스 /스쿼시경기장		테니스장	테니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164
			스쿼시장	스쿼시	
			수영장	수 영	
19	계양체육관 /계양아시아드양궁장	체 육 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배드민턴·양궁·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855
			양궁장		
20	남동체육관 삼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체 육 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체조·럭비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0
		럭 비 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21	강화고인돌체육관 /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체 육 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태권도·BMX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603
			BMX경기장		
22	선학체육관 /선학하키경기장	체 육 관	주경기장	복싱·하키 배드민턴·탁구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하 키 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23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연희크리켓경기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종합 체육시설 각종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06
24	옥련국제사격장			사 격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 172번길 142
25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빙 상 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아이스하키 스케이트, 컬링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526
			컬링연습장		

[별표 2]

체 육 시 설 전 용 사 용 료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 설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도원수영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800,000		* 프로경기는 체육경기 외로 적용
	야간		450,000		675,000		900,000		1,200,000		
도원체육관	주간		70,000		110,000		240,000		360,000		*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
	야간		105,000		165,000		360,000		540,000		
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	스 피 드 스케이팅장		70,000		90,000		90,000		110,000		* 조기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경감 하고, 야간 사용시 해당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 다.
	피겨스케 이트 장		50,000		70,000		70,000		90,000		
	하 키 장										
가좌 테니스장	주간 2시간	실내 (코트당)	20,000		30,000		40,000		50,000		* 축구(풋살장), 실내 야구 연습장은 게임당 1일 2시간, 야구는 게임 당 1일 3시간 사용을 기준 한다.(프로 경기 는 제외)
		실외 (코트당)	10,000		15,000		20,000		25,000		
인천월드컵 경기장(문학경기장)	육상장		100,000		150,000		300,000		450,000		* 연회장과 전시장의 1일 사용기준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축구장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문 학야구장	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 부대 시설 사용시 운영 여건을 감안 별도 금액 을 부과 징수 한다.
	야간		150,000		225,000		300,000		450,000		
인천삼산월드체육관 (Incheon World Gymnasium)	주경기장		130,000		200,000		300,000		400,000		* 프로경기의 경우 전용 사용료 원가 산출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보조경기장		30,000		50,000		100,000		150,000		
	축구장		50,000		100,000		100,000		140,000		
송도ING 종합스포츠타운	축 구 장	주경기장	70,000		100,000		200,000		300,000		
		보조 경기장	50,000		80,000		100,000		150,000		
		풋살구장	20,000		30,000		40,000		60,000		
	야 구 장	주경기장	60,000		90,000		120,000		180,000		
		보조 경기장	40,000		60,000		110,000		160,000		
		실내 연습장	70,000		100,000		140,000		210,000		
송도ING야구장	야 구 장		40,000		60,000		80,000		120,000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축구장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인천국제벨로드롬	사이클		200,000		200,000		300,000		300,000		
다목적운동장	구 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정구코트 (면 당)		20,000	30,000	25,000	40,000	35,000	60,000	45,000	70,000	
	하 키		60,000	90,000	90,000	120,000	120,000	180,000	180,000	240,000	

시 설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송림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13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750,000 (400,000)	* 계양테니스장은 가좌 테니스장 사용료 적용
	수영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계양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13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750,000 (400,000)	
계양아시아드 양궁장	양궁장	주간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남동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13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750,000 (400,000)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500,000 (200,000)	750,000 (300,000)	1,000,000 (500,000)	1,500,000 (750,000)	
강화고인돌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13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750,000 (400,000)	
강화아시아드 BMX경기장	BMX경기장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선학체육관	주경기장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선학하키경기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500,000 (200,000)	750,000 (300,000)	1,000,000 (500,000)	1,500,000 (750,000)	
문학박태환수영장	경영풀	주간	600,000	900,000	1,200,000	1,800,000	
	연습풀	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다이빙풀	주간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열우물테니스 경기장	센터코트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서브코트	주간	130,000	200,000	300,000	400,000	
	실내코트 (코트당)	주간 2시간	25,000	35,000	50,000	65,000	
	실외코트 (코트당)	주간 2시간	15,000	20,000	25,000	35,000	
	수영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열우물스쿼시 경기장	센터코트	주간 3시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단복식 코트 (코트당)	주간 2시간	20,000	30,000	40,000	60,000	

시 설	사용구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평 일	공 휴일	평 일	공 휴일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주 경 기 장	육상장	주간	130,000	200,000	300,000	400,000	* 연희크리켓경기장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사용료 적용
		잔디 구장	주간	500,000	750,000	1,300,000	1,950,000	
	보 조 경 기 장	육상장	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대관 중 경기연습, 개인 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 활동의 경우 체육경기 사용료 적용
		잔디 구장	주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테니스장 (실외)		주간 2시 간	10,000 (코트 당)	15,000 (코트 당)	20,000 (코트 당)	25,000 (코트 당)	
선학국제빙상 경기장	빙 상 장		주간 1시 간	100,000	150,000	500,000	750,000	* 옥련국제사격장 실탄, 표적지 대금 별도 부담
옥련국제사격장	10M 25M 50M	주 간		30,000	40,000	40,000	50,000	
	10M 러닝타겟	주 간		30,000	45,000	40,000	60,000	
	결선경기장	주 간		60,000	90,000	70,000	105,000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 설		기 간		1인당 이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도원수영장		1회		일반 3,000 군인· 청소년 2,500 어린이 2,000	일반 2,700 군인· 청소년 2,200 어린이 1,800	* 단체는 동일소속팀 20인 이상으로 함 * 롤러스케이트 대여료는 1,000원(동일일 기준) * 테니스장은 코트당 기본 4명을 기준으로 이용료 적용
가좌테니스장		1회 1시간 (실내코트)		일반 5,000 군인· 청소년 4,000 어린이 2,800	일반 4,000 군인· 청소년 3,200 어린이 2,200	
		1회 1시간 (실외코트)		일반 2,500 군인· 청소년 2,000 어린이 1,400	일반 2,000 군인· 청소년 1,600 어린이 1,100	
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		주간		일반 1,500 군인· 청소년 1,000 어린이 600	일반 1,200 군인· 청소년 700 어린이 500	
		야간		일반 2,000 군인· 청소년 1,500 어린이 1,000	일반 1,500 군인· 청소년 1,000 어린이 600	
수봉양궁장		1회 2시간		2,100	1,400	
수봉궁도장 계산궁도장		1회 2시간		1,400	1,000	
인천국제벨로드롬		1회 1일		일반 7,000 학생 5,000		
다목적운동장	정구코트	1 회 1시간	주간	1,000	3,000	
			야간	1,500	4,500	

시 설		사용구분	1인당 이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체육관	송림체육관	1회	일반 3,300	일반 2,600	*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테니스장), 계양테니스장은 가좌테니스장 이용료 적용
	계양체육관		군인·청소년 2,200	군인·청소년 1,800	
	남동체육관		어린이 1,100	어린이 900	
	강화고인돌체육관				
	선학체육관				
수영장	문학박태환수영장	1회	일반 6,000 군인·청소년 5,000 어린이 3,000	일반 4,800 군인·청소년 4,000 어린이 2,400	* 스케이트 대화료는 1컬레당 3,000원(모든종류)
	송림체육관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	1회	일반 5,000 군인·청소년 4,000 어린이 3,000	일반 4,000 군인·청소년 3,200 어린이 2,400	
열우물테니스경기장		1회 1시간 (실내코트)	일반 6,000 군인·청소년 5,000 어린이 3,000	일반 4,800 군인·청소년 4,000 어린이 2,400	
		1회 1시간 (실외코트)	일반 3,000 군인·청소년 2,500 어린이 2,000	일반 2,400 군인·청소년 2,000 어린이 1,600	
열우물스쿼시경기장		1회 1시간	일반 8,000 군인·청소년 6,000 어린이 4,000	일반 6,400 군인·청소년 4,800 어린이 3,200	
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1회	일반 7,000 학생 5,000	일반 5,600 군인·청소년 4,000	
선학국제빙상경기장		1회 3시간	일반 4,000 군인·청소년 3,000 어린이 2,500	일반 3,200 군인·청소년 2,400 어린이 2,000	
잔디구장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1회	일반 3,300	일반 2,600	
	계양아시아드양궁장		군인·청소년 2,200	군인·청소년 1,800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어린이 1,100	어린이 900	
	선학하키경기장				

시 설		사용구분	1인당 이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1시간	4시간	1시간	4시간	
옥련국 제사격 장	10M	소총, 권총	3,000	8,000	2,400	6,400	
	25M	권총 / 스탠다드 / 센터파이어	6,000	17,000	4,800	13,600	
		속사 (0.5초 5사대)	11,000	33,000	8,800	24,000	
	50M	소총, 권총	6,500	21,000	5,200	16,800	
	10M 러닝타겟	소총	3,500	8,000	2,800	6,400	

[별표 6]

체육시설 방송사용료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T · V		라디오		비 고
			국제	국내	국제	국내	
중 계 방 송	체 육 경 기		40,000	30,000	20,000	15,000	*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체 육 외 행 사		70,000	60,000	30,000	21,000	
녹 화 촬 영	녹화 또는 녹음		중계방송의 반액				* 음성정보중계료는 15,000원
	경기 또는 행사촬영		T · V중계방송과 동일				
전 기 료			기본사용료				* 인터넷중계료는 텔레비전과 동일하게 적용
도원체육관			40,000				
도원수영장			50,000				* 방송시설 사용료중 기본사용은 앰프 + 마이크 1대로 하며, 마이크 1대 추가시 3,000원 추가
가좌테니스장			70,000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70,000				
인천월드컵경기장 (문학경기장)	주경기장		80,000				
	보조경기장		60,000				
문학야구장			70,000				
인천삼산월드체육관 (Incheon World Gymnasium)			80,000				
인천국제벨로드롬			70,000				
다목적운동장			70,000				
송도 LNG 종합스포츠타운			70,000				
인천축구전용경기장			80,000				
송림체육관, 문학박태환수영장,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 계양체육관/계양아시아드양궁장(계양테니스장), 남동체육관/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강화고인돌체육관/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선학체육관/선학하키/선학국제빙상경기장,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연희크리켓경기장, 옥련국제사격장			주경기장		80,000		
			보조경기장		60,000		

[별표 8]

부속시설 사용료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요 금	비 고
전 광 판		1일 기본료(60,000)+(전광판주변압기 용량×기본요금×사용일수/30)+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	· 아마추어 경기는 기본료의 50퍼센트 감액 · 야구장 전광판과 타워를 동시 사용할 때에는 전기수용기본료 1개만 적용 · 체육관 냉·난방 및 천정조명 시설을 동시 사용할 때에는 전기기본료 1개만 적용
냉·난방	전기	1일 기본료(60,000)+(부하의 최대용량×사용일수/30)+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	
	LNG	연료비 (시간당 60,000)	
천 정 조 명		1일 기본료(60,000)+(부하의 최대용량×사용일수/30)+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	
조 명 탑		1일 기본료(60,000)+(부하의 최대용량×사용일수/30)+실제사용 전기관허요금	
의자(접이식)		1,000	1회 1개
탁자		1,000	1회 1개
샤워시설 이용		1,000	1회 1명
개인 사물함		3,000	1월 1개
사격장 (실탄보관)	발당	10	일반보관(입고시)
	1년	360,000	대형BOX
	1년	240,000	소형BOX
그 밖의 시설		시장이 따로 정함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14조(사용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에 근거가 미비한 조항에 대하여 규제 완화하는 등 관
련근거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문화복지위원회 공 병 건 의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생략)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u>이용권,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u>	<u><삭 제></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③ (생략)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③ (현행과 같음)
④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및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u>	④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금고에 예치하거나 그 이행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